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진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의료인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대행업무는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로 하며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2항)
-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조례안건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보건소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보건소의 의료인력 부족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사무중 업무대행이 가능한 사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에 정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사무는 동법 제24조(권한 위임등)제2항에 의거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보조, 실비 변상 기타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제3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0조 (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3. 지역국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권한의 위임등)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②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③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내용타당성

- 현재 보건소에 근무중인 의료전문 가용인력은 보건소장을 포함 모두 23명(관리의사 2명, 공중보건의 20명)으로 이중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5명, 읍면 보건지소에 15명이 배치되어 치과, 한방, 의과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현재는 인력운용상 문제점은 없음.

- 그러나, 계약직 의료인력의 기한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공중 보건직이 제대 후 신규자원이 장기간 재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분야의 진료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 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용상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과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24
----------	------

제출연월일: 2002. 8. 7.

제 출 자: 과 주 시 장

제안이유

-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의료인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대행업무는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로 하며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2항)
- 다.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건소 ☎ 940-4881
입안자	보건소장	허길자
	보건행정담당	조육래
	담당자	신금화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조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24조 (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2.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법 제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법 제9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실험 또는 검사업무
5.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의료인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대행업무는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로 하며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2항)
-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조례안건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보건소 사무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보건소의 의료인력 부족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사무중 업무대행이 가능한 사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에 정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사무는 동법 제24조(권한 위임등)제2항에 의거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보조, 실비 변상 기타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제3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3. 지역국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권한의 위임등)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②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③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내용타당성

- 현재 보건소에 근무중인 의료전문 가용인력은 보건소장을 포함 모두 23명(관리의사 2명, 공중보건의 20명)으로 이중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5명, 읍면 보건지소에 15명이 배치되어 치과, 한방, 의과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현재는 인력운용상 문제점은 없음.

- 그러나, 계약직 의료인력의 기한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공중 보건외과가 제대 후 신규자원이 장기간 재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분야의 진료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 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용상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